

검 토 보 고 서

【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】

1.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홍성현 의원)	1
2.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(윤희신 의원)	13
3.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(홍성현 의원)	25
4.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신순옥 의원)	41
5.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(박정식 의원)	61
6.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75
7.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1



관련법규

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8425호, 2022. 2. 18. 시행]

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① ~ ② <생략>

③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·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[법률 제18685호, 2023. 1. 5. 시행]

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 ①

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

2.~7. <생략>

② <생략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3198호, 2023. 1. 5. 시행
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
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”란 피해자 1명당
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

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2. 부상의 경우: 3천만원 이상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
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
생긴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
② <생략>

□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재난안전의무보험“이란 법 제3조제10의2호에 따라 재난이나
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
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
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[별표]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■ 고시 [별표]

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(제2조 1호 관련)

“재난안전의무보험“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
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
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
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
1.~40.(생략)

4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「충청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- 제4조(대상의안)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.
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
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
미만일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충청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제2조 학원설립
· 운영자 등의 책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: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구본용